

이 보도자료는 배포 즉시 보도하여 주시고, 공개되는 범죄사실은 재판에 의하여 확정된 사실이 아님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서부지방검찰청

전문공보관 인권보호관 김민형

전화 02-3270-4395

보도자료

2022. 8. 26.(금)

제 목 직장동료 등 상대 3억 편취 및 특수상해 현직경찰관 구속기소

공소제기 후 공개의 요건 및 범위

- 피고인, 죄명, 공소사실 요지, 공소제기 일시, 공소제기 방식, 수사경위, 수사상황, 범행 경과 및 수사의 의의 (제11조 제1항)
- 제9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6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고 미리 공개가 필요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어 소속 검찰청의 장의 승인이 있는 경우(제11조 제2항 제2호) 제7조 제2호 내지 제6호의 공개금지정보

- 서울서부지검은 오늘(8. 26.) 동료 경찰관 등으로부터 동생 치료비 명목 등으로 합계 3억 원 상당을 편취하고, 채무변제를 독촉하는 동료 경찰관을 부엌칼로 찔러 상해를 가한 현직 경찰관을 사기, 특수상해 등으로 구속 기소 하였음
- 자금추적 등 검찰의 적극적 보완수사를 통해 차용금을 도박자금, 채무변제 등에 사용한 사실을 밝혀내었고, 장기간 피해변제를 하지 않고 오히려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는 등 증거인멸, 피해자에 대한 위해 우려 있어 검찰에서 직구속 하였음

I 피고인 및 공소사실 요지

○ 피고인

- A(56세, 서울○○경찰서 경위)

○ 공소사실 요지

- '12. 9. ~ '21. 7. 고향친구인 피해자 B에게서 마치 피고인의 동생 교통사고 치료비 등에 사용할 것인양 총 75회 합계 2억 5,170만 원을 빌려 기존 채무변제, 도박자금 등으로 사용 [사기]
- '12. 11. ~ '21. 12. 동료 경찰관인 피해자 C에게서 같은 방법으로 총 63회 5,531만 원을 편취 [사기]
- '21. 5. 28. 동료 경찰관인 피해자 D에게서 채무변제 독촉을 받아 “돈이 없으니 같이 죽자.”라며 부엌칼로 피해자의 복부를 1회 찔러 길이 약 15cm 찔과상을 가함 [특수상해]
- '22. 8. 6. 동료 경찰관인 피해자 D에게서 채무변제 독촉을 받아 피해자의 휴대폰을 빼앗아 발로 밟아 깨뜨림 [재물손괴]

II

수사 경과

- '21. 12. 13. 피해자 B 사기 사건 송치
- '22. 5. 25. 피해자 D 특수상해 사건 송치
- '22. 7. 14. 피해자 C 사기 사건 송치
- '22. 8. 12. 피해자 D 재물손괴 사건 송치
- '22. 3.~8. 서울서부지검, 대검 자금추적 전문수사관 지원받아 차용금 용처 확인 등 보완수사 후 사전 구속영장 청구
- '22. 8. 26. 피고인 구속기소(8. 18. 구속)

III

참고 사항

- 피해자들은 “동생이 교통사고로 식물인간이 되어 병원비와 변호사 비용이 필요하다.”라는 피고인의 말에 속아 돈을 빌려줌. 이후 이미 빌려준 돈을 반환받기 위해 십여년간 계속 돈을 빌려주었으나, 피고인의 신분 때문에 피해금을 돌려받지 못할 것을 염려하여 피해신고도 하지 못함
- 경찰 송치 후 검찰의 자금추적 등 적극적 보완수사를 통해 기존 채무변제, 도박자금 등 차용금의 용처 특정
- 피고인은 피해변제를 앓고 오히려 채무변제를 독촉하는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는 등 증거인멸, 피해자에 대한 위해 우려 있어 검찰에서 직구속 하였음☑